문서번호	복지정책과-1691
결재일자	2015.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교육문화복지국장		
전진주	代이명주	代이용철	01/22 도일환		
협 조					

2015년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2015. 1.

교육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2015년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관내 보훈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 및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 추진방향

○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리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 사업비 지원을 통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

❑ 보훈단체 현황

구 분	단 체 명	대 표 자	보훈처등록유공자 수 (보훈회관등록회원 수)	소 재 지
국가유공자 단체	광복회	이광종	87 (85)	성북구 보훈회관
	상이군경회	안일성	924 (910)	
	전몰군경유족회	안상필	436 (436)	
	전몰군경미망인회	한정순	416 (416)	
	대한무공수훈자회	이석중	915 (350)	
개별법령 규정단체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정환	40 (68)	
	고엽제 전우회	송성용	1,472 (475)	
	6.25참전유공자회	이영우	1,406 (443)	
참전유공자 단체	월남참전전우회	전상용	2,099 (360)	별도소재 사무실
계			7,795 (3,543)	

Ⅱ 추진경과

❑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2012년 지원액	81,000	5,000	12,000	12,000	12,000	12,000	5,000	8,000	8,000	7,000
2013년 지원액	81,000	5,000	12,000	12,000	12,000	12,000	5,000	8,000	8,000	7,000
2014년 지원액	90,000	6,800	12,000	12,000	12,000	12,000	6,800	9,800	9,800	8,800
인상분	9,000↑	1,800↑	-	-	-	-	1,800↑	1,800↑	1,800↑	1,800↑

❑ 변경내역

구 분	2012년도 이전	2013년도	2014년도
예산편성부서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통계목	사회단체보조금 (307-03)	사회단체보조금 (307-03)	사회복지보조 (307-10)
지원범위	·사업비 지원이 원칙 ·제한적인 운영비 지원 ·자본적 경비 제외	·사업비 지원이 원칙 ·제한적인 운영비 지원 ·자본적 경비 제외	·자본적 경비 제외 ·운영비지원 가능
사업공모실시	○	○	X
위원회 심의	○	○	X

Ⅲ 추진계획

❑ 지원기간 : 2015. 1월~ 12월

❑ 지원사업

○ 기존 사회단체 지원 사업 (안보의식강화 운동, 보훈의 달 행사 등)

○ 국가 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선양사업 및 회원관리 지원

❑ 2015년 지원계획

○ 지원액 : 90,000천원 (9개 단체)

○ 단체별 지원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계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전우회
2015년 지원액	90,000	6,800	12,000	12,000	12,000	12,000	6,800	9,800	9,800	8,800

※ 전년도(2014년) 대비 지원액 변동없음.

❑ 변경사항

○ 보조금을 사업비와 운영비로 명확히 구분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한 지방재정법 개정(2014.5.28. 공포)에 따른 예산과목 변경

※기획예산과-11361(2014.9.17.) 및 보훈처 총무과-5267(2014.9.24.)호과 관련

○ 보훈단체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 편성함

현행	개정(2015.1.1)		지원범위
307민간이전 10.사회복지보조	운영비	307 민간이전 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운영비 교부
	사업비	307 민간이전 11. 사회복지사업보조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사업비 교부

Ⅲ 세부추진계획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검토	⇨	보조금 지원범위 결정	⇨	사업계획 변경·승인	⇨	약정 체결	⇨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정산검사
보훈단체		복지정책과		구청장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보훈단체		복지정책과

○ 보조금 신청시 구비서류

- 2015년 단체별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 신청서, 단체소개서(정관 또는 회칙 첨부), 단체회원 명단

○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 2015. 1월, 7월 (연2회 상.하반기 분할지급)
- 교부조건
  - 보훈단체 보조금 지원계획, 보조금 지원 약정에 의거 당초 신청한 사업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 금지
  - 보조금 집행완료 후 정해진 기일 내에 증빙서를 첨부하여 사업실적 및 정산서 제출

○ 보조금 정산

- 정산시기 :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 단체별 정산서류를 징구
- 정산서류
  - 보조금정산서,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서, 사업추진 실적 보고서
  - 증빙자료 : 지출결의서,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 영수증, 사진 등

붙 임 : 1. 관련근거 1부.
2. 보조금 신청서 서식 1부.
3. 사업계획서 서식 1부. 끝.

관 련 근 거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의2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조직) ① 고엽제전우회는 본부·지부·지회를 둘 수 있다.

② 고엽제전우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접 도·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엽제전우회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0조(조직) ① 특수임무유공자회는 본부, 지부 및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특수임무유공자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둔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회원의 수,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인접한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5조(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교육 및 전적지 순례
3. 호국·보훈의 달 참배유족 수송지원 사업
4.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